

광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가단59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변론 종결 2024. 11. 27.

판결 선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F, G, H, E, T, U, V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2-3)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I, J, K, L, M, W, 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3-4)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다. 피고 N, O, P, Q, R, S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4)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라. 피고 Y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5-2) 기재 지분에 대하여 각 1989.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F, G, H, E, T, U, V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기재 상속지분표 (2-3)기재 지분에 대하여, 피고 I, J, K, L, M, W, 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3-4) 기재에 대하여, 피고 N, O, P, Q, R, S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4) 기재 지분에 대하여, 피고 Y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5-2)
기재에지분에 대하여, 1989. 10.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 W, X, Y: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김혜선

별지